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
(민원감사담당관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61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이 개정(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7. 시행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8조)
- 라.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포상(안 제9조 및 제10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이 2022. 12. 27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 권고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 내용('22.12.27 시행)으로는

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·의결기능 추가(영 제10조)

-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여부 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
개정 전	개정 후
▶ 관련 심의·의결 기능 없음	▶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이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
② 소송 등 지원 의무화 및 대상 확대(영 제17조)

-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,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, 재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지원대상 확대
- 소송 등 지원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

개정 전	개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지원 여부)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대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 (지원을 할 수 있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지원 여부)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(지원을 해야 한다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지원 대상) 재직 공무원에 한해 소송 등 대응 관련 지원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지원 대상)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지원 세부사항) 관련 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지원 세부사항) 지자체 규칙에 위임

③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규정 신설(영 제11조의3)

개정 전	개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련 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위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적극행정위원회 참여 배제 가능

※ 심신장애, 비위사실,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안건 심의시 회피의무 미준수 등의 경우 해촉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관련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22. 12. 27.] [법률 제1910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(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(시·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)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3.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.

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.

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8.]